

산재판례

[손해대상(자)]

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다2023 판결

판시사정

1.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
2.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,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3.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, 그 확정력의 의미

판결요지

1.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,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,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,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·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에 지배·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.

2.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

당한 경우,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3.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 될 경우,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,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.

참조조문

[1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[2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[3]행정소송법 제1조[행정처분일반], 행정심판법 제37조

참조판례

[1]대법원 1992. 10. 9 선고 92누11107 판결(공1992, 3152),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60509 판결(공1995하, 2258),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 14633 판결(공1996하, 2886)[2]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 17181 판결(공1993상, 1409),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5437 판결(공1993하, 2648),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3누21927 판결(공1994하, 3281)

[손해대상(산)]

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1100 판결

[판시사항]

[1]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 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(적극)

[2]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,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면제 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(=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[별표 1]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

[판결요지]

[1]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.


[2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“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,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9.

12. 31.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1항, 제2항,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,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[별표 1]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
[참조조문]

[1] 민법 제396조, 제763조/[2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,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9. 12. 31.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1항(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), 제2항(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5항

[참조사례]

[1]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11440 판결(공1998하, 2380),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6416 판결(공1999하, 1249),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8다50586 판결(공2000상, 470) 

대한산업안전협회 안내전화

(중앙회)	(보령)	(041)936-5550	936-5551	강원지회	(033)652-2187~9	652-2186
중앙회 (032)667-4191	광주전남지회	(062)943-0156~8	943-0159	(춘천)	(033)261-6585	261-6586
건설안전국 (02)598-5071~3	(여수)	(061)751-3999	751-3006	(원주)	(033)734-6201	732-6201
(지회)	(목포)	(061)278-8620	278-8621	충북지회	(043)223-0617~8	233-0605
서울지회 (02)869-7873~5	울산지회	(051)265-1600	276-4595	(충주)	(043)848-4013	843-1017
부산지회 (051)315-6996	안산지회	(031)491-4232~3	491-4554	전북지회	(063)241-9311~3	241-9322
(양산)	(안양)	(031)382-9988	387-4836	구미지회	(054)451-1221	455-4513
대구지회 (053)387-1343~4	수원지회	(031)241-2206~8	241-0700	(안동)	(054)854-1020	
대전지회 (053)359-2131	(평택)	(031)611-3057~8	611-3059	포항지회	(054)277-0163~5	281-8650
인천지회 (032)579-2181~5	성남지회	(031)741-8456~8	741-8459	창원지회	(053)281-3936~7	284-1534
대전충남지회 (042)628-2160~2	경기북부지회	(031)876-0281~3	876-0288	진주시회	(053)752-4030	758-4030
(천안)	부천시지회	(032)652-5560~2	652-5563	제주지회	(064)753-8237	753-8229